

# 전자어음의 전자문서성과 증거법상의 문제

양 석 완\*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전자어음의 의의 및 적용법규
- III. 전자어음의 문서성
- IV. 전자어음의 증거능력과 증거방법
- V. 전자어음의 증거력과 공인전자서명
- VI. 결 론

## I. 문제의 제기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 지난 3월 22일 공포되었다. 다만, 그 시행은 2005년 1월 1일부터이다. 현행 어음법은 실물 서면 어음의 경우를 전제하여 만들어진 법으로서 전자결제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므로 이 법률을 제정하여 전자어음을 일반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에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어음을 통하여 조세투명성 제고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며, 디지털환경에 따른 기업간 결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결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전자어음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이용의 확산으로 전자상거래 및 금융거래가 기업간 일반적인 거래형식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지급수단도 전자적 방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전자화폐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개발되면서 실물경제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어음도 전자적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이다.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연쇄부도 등으로 인한 어음제도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어음의 존폐에 대한 논의가 정부를 중심으로 있었으며, 금융권에서도 어음을 대체할 만한 기업간 결제제도를 고안하여 이용하여 오고 있다.<sup>1)</sup> 어음의 폐해로 인한 정부의 어음 이용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일부에서는 어음 관리비용 감소 등의 편의와 유가증권의 전자화 추세에 맞추어 전자어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자어음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전자어음이나 전자수표와 관련하여 2002년 10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따르면 어음, 수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안에 따르면, 전자어음 및 전자수표가 발행·유통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나 어음·수표법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sup>2)</sup>

그러나, 전자어음을 도입하는데 대하여 반대의견도 강하였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어음제도의 근본적 폐해를 지적하면서 어음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던 상태에서 새로운 전자어음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더욱 더 위험한 일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다. 아울러 전자적 방식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논제도 타당성이 있었다.

전자어음의 도입에 대해 어음의 폐해를 우려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음의 폐해 때문에 어음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논의 중에 2001년 11월 국회에서 발의되고 올 초 공포된 어음의 일반적인 기능 이외에도 전자어음의 편리한 기능인 어음의 분할양도라든가 전자어음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중앙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이러한 결제수단으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2000.5, 한국은행),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구매전용카드(2000.10, 재정경제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2001.2, 한국은행), 기업구매금융(2001.7, 재정경제부) 등이 있다. - 손희성, B2B에 있어서 기업간 전자외상매출채권의 현황과 과제,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Ⅰ) - 전자증권을 중심으로 -, 한국법제원, 2002.5, p.45

2) 전자어음 등의 도입을 입법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은 전자거래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역행하고 전자선하증권의 활용이 현실화된 시점입을 감안할 때 부당하며 어음법이나 전자거래기본법이 아닌 전자금융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유가증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둔다는 것 역시 법체계적인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한다. -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34회 학술대회, p.20

이에 이 논문에서는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전자어음법상의 전자어음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전자어음이 전자문서로서 전자거래를 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해의 제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書面性·署名性 요건에 대한 대응과 ② 증거법상의 증거능력 및 증거방법 그리고 증거력에 관한 조치이다.

## II. 전자어음의 의의 및 적용법규

### 1.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전자어음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항). 즉 현행 어음법상 서면상의 약속어음이 '전자문서(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발행되어 전자적 방식으로 전전유통되는 어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전자어음을 기존의 어음과 달리 어음 발행, 입금 등이 모두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방식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sup>3)</sup> 그러나, 전자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음의 유형적 요소인 증권의 전자화로 족하고, 온라인에 의한 결제방식이 전자어음에 반드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으로서 약속어음만을 대상으로 하고 환어음을 배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백하지 않으나 환어음의 경우에는 수표와 같이 지급위탁 증권으로서 어음행위 당사자로서 약속어음에는 없는 지급인의 어음행위가 추가로 필요한 데서 전자어음의 법률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 같다.<sup>4)</sup> 전자어음법의 전자어음은 전자문서로 작성된 약속어음으로서 어음법을 기본으로 하고 전자어음에 관한 특례만을 별도로 규정화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전자어음은 서면을 기반으로 하는 어음과 달리 유형의 중서가 아닌 전자적 정보인 전자문서로 발행, 행사 및 이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면을 기반으로 이

3)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 제도에 관한 연구", 법률제도위탁 그룹보고서,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2.1. p.185

4) 나승성, "전자어음의 법적 문제점 검토", 인권과 정의 2003년 7월호, p.141

루어지는 어음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 어음법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전자어음은 약속어음을 전자적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약속어음 및 환어음에 이은 제3의 어음이 아니라 기존의 어음과 병행 사용된다. 그리고 수표가 전자환어음과 같이 지급위탁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에서 전자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sup>5)</sup> 환어음의 지급인과는 달리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수표의 유통성이 보호될 수 있어 이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의 경우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이나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어음법 제1조, 제77조) 등 어음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제는 '증권'이 서면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체로 서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증권'이 대체로 서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서면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명문으로 서면일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어음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으면 족하다. 즉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어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sup>6)</sup>

## 2. 전자어음의 적용범위

그렇다고 하여 전자어음이 바로 어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왜냐 하면, 전자어음의 기술적 특성상 어음법이 바로 적용되기에는 곤란한 점이 많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다. 다만, 전자어음은 어음상의 서면 및 기명날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관한 법인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면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

5)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자수표가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이 수표중심의 사회라는 금융환경으로 인해 전자수표로의 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라는 데서 기인한다고 한다. - 임재호, 전자수표시스템-미국 FSTC의 eChecks을 중심으로-, 지급결제와 정보기술(Payment System & IT), 2001. 7·8. p.1이하

6) 나승성, 전제논문, p.142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5조)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다만 동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문서가 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sup>7)</sup>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 7) 유엔 상거래법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은 법의 적용범위를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ies)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메시지 형식의 정보에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This Law applies to any kind of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data message used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activities). 여기서 상업적(commercial)이라는 용어는 계약의 여부를 묻지 않고 상업적 성질을 가진 모든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폭넓게 풀이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업적 성질을 가진 관계란 예컨대,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나 교환을 위한 모든 거래, 배분 계약, 상사대리 또는 대표, 팩토링, 리스, 건축계약, 컨설팅, 엔지니어링, 라이선싱, 투자, 금융, बैं킹, 보험, 개발계약 또는 면허권, 합작투자 및 다른 유형의 산업 또는 회사, 항공, 해상, 육상 또는 철로에 의한 물품 및 여객의 운송계약 등을 포함한다고 하여 광범위한 영역까지 적용되도록 하였다(This term "commercial" should be given a wide interpretation so as to cover matters arising from all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whether contractual or not. Relationships of a commercial natur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transactions: any trade transactions for the supply or exchange of goods or services: distribution agreement: commercial representation or agency: factoring: leasing: construction of works: consulting: engineering: licensing: investment: financing: banking: insurance: exploitation agreement or concession: joint venture and other forms of industrial or business cooperation: carriage of goods or passengers by air, sea, rail or road).
- 또한,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은 원칙적으로 통일전자거래법상의 전자문서(전자기록물: electronic records) 및 전자서명은 어느 거래(to any transactions)나 적용된다(Section 3 (a)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ubsection (b), this [Act] applies to electronic records and electronic signatures that relate to any transaction. (b) This [Act] does not apply to transactions subject to the following laws: ……). 다만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서는 개별적인 규정(적용배제조항)을 두어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거래당사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거래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Section 5 (b) This [Act] only applies to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each of which has agreed to conduct transactions electronically. An agreement to conduct transactions electronically is determined from the context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including the parties' conduct. 이 법은 거래를 전자적 수단으로 하기로 합의한 당사자간의 거래에만 적용된다. 당사자가 전자적으로 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는지는 정황(context) 및 당사자의 행동 등을 포함한 주변상황으로 결정된다). 미국 통일전자거래법(UETA)에서는 우리의 어음·수표에 해당하는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의 전자적 대응물이라 할 수 있는 양도성기록(Transferable Records)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ection 16 (a) In this section, "transferable record" means an electronic record that: (1) would be a note under [Article 3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or a document under [Article 7 of the Uniform Commercial Code] if the electronic record were in writing: and (2) the issue of the electronic record expressly has agreed is

거래인 전자거래에 한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므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전자어음이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거래관련성'을 갖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데, 거래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sup>8)</sup>는 어음의 무인성을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는 어음이 무인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sup>9)</sup> 전자거래법을 주장하기 위하여 '거래관련성'을 고려할 때 어음이 비록 무인성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어음의 유통을 보호·장려하기 위한 측면에서 인정되는 특성이라 할 것이므로, 어음 그 자체는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거래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통어음의 경우에는 거래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유통어음은 전자거래기본법상의 거래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와는 달리, 유통어음의 경우에도 이를 금융거래로 보아 거래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p>10)</sup> 다만 유통어음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거래관련성을 논할 실익은 적다고 본다.<sup>11)</sup>

정작, 전자어음법은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4항). 발행인이 제6조 제1항의 전자어음에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 제7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본다면, 전자어음법에 전자거래기본법이 명문으로 적용되고 있고, 공인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12월 7일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을 일반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으로 이원화하고, 공인전자서명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이다.<sup>12)</sup>

subject to this [Act]. (a) 본 절에서 "양도가능한 기록물"이란 ① UCC 제3조의 어음이나 UCC 제7조의 서류가 전자적으로 기록되어 질 때, ② 전자적 기록물의 발행자가 명시적으로 본 법에 적용된다는 것을 동의했을 때 적용된다.

8) 이철송, 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방향, 인터넷법률 5호(2001. 3), pp.7-10 : 정완용,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제도와 전자식 유가증권제도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법률제도 연구 - 전자상거래 활성화 워킹그룹보고서(Ⅶ), 2002. 1, pp.181-182

9) 정경영,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법률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02. 10, p.17

10) 정경영, 전계논문, p.31

11) 나승성, 전계논문, p.142

### Ⅲ. 전자어음의 文書性

#### 1. 전자어음의 전자문서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이라 함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제2조 제2호)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배서전자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제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문서가 문서인가 하는 데에는 확설이 갈린다.

먼저,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표현의 도구로서 유형물이라 함은 종이에 국한하지 않으며 나무·돌·금속·플라스틱·섬유, 가죽 등도 포함되고, 붓, 만년필, 연필, 볼펜 등의 필기용구에 한하지 않으며, 인쇄·조각 등 문자와 기호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표현의 수단으로서 문자라 함은 국어문자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포함되며, 기호라 함은 전신부호, 암호, 속기, 점자 등을 뜻한다. 사상이라 함은 감각·경험에 대한 사고 작용을 작동시키거나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든 의식내용을 말하며, 일정한 판단·기록·감상·감정·욕망 등을 표시한다. 문서에 작성명의인의 서명·날인의 유무도 문제되지 않으며, 작성자가 사인인가 공무원인가 하는 것도 불문한다.<sup>13)</sup>

전자문서가 문서인가 하는 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갈린다. 긍정설은 전자문서는 문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전자문서 그 자체는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상, 의사, 관념의 표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출력하면 반드시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는 문서로 재현되며, 재현된 문서와 전자적 기록물은 일체 불가분의 관련을 가지는 것이므로 문서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sup>14)</sup>

12) 윤준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JURIST 2004년 6월호, p.39

13) 김상원 外 3인, 주석민사소송법(IV)[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1997, p.419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p.419 이하 : 강현중,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02, p.554 이하 참조

부정설은 전자문서는 문서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서, 전자문서가 출력되면 문서로서 재생된다는 것은 그 이전의 전자문서 자체가 문서성을 가지는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전자문서가 문서화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기기와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설에 따르면 이들 전체가 문서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이렇게 되면 문서의 전단계도 문서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sup>15)</sup>

그런데, 현행 법령 중 일부는 전자문서를 문서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법령은 전자문서를 문서로 본다고 함으로써 전자문서에 서면문서 대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즉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업기술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화물유통촉진법 제48조의 4 제1항,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전자문서를 문서로 본다고 의제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문서를 상위개념으로 하고, 전자문서는 하위개념으로서 상위개념인 문서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법령도 있다. 즉 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호, 헌법재판소 공문서규칙 제3조 제1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제3조 제1호 등에서는 전자문서를 문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생각건대, 전자문서는 별다른 기술이나 지식이 없어도 손쉽게 무한한 양의 복제물을 만들 수 있고, 그 복제물은 최초의 것과 완벽히 동일한 존재라는 데 있다. 나아가 전자문서는 타인이 쉽게 성명을 모용함으로써 위작하거나 진정하게 작성된 내용마저 변작할 수 있고, 게다가 흔적을 남기지 아니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위작될 염려가 적고, 고정되어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종래 증거에 대한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전자문서에 대하여 선뜻 서면문서와 같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수 없다.<sup>16)</sup> 또한 서면문서는 육안으로 보고 읽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자문서는 전

14) 김진환,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143 ; 황찬현, 전자문서의 민사증거법상의 문제, 법조 제48권 9호(법조협회, 1999. 9), p.18 이하

15) 오기두, 형사절차상 컴퓨터 관련증거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p.227

16) 한규현,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안암법학 제15호, 안암법학회, 2002. 11. p.148 ; 김진환, 전제논문, p.164

자적 신호 내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육안으로 보고 읽을 수 없고, 반드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인쇄하여야 그 내용을 보고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문서는 서면문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서면문서와 같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하고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종이문서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현실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전자문서가 서면문서를 대체해 가는 추세이며, 많은 법령에서도 전자문서를 문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전자문서를 문서가 아니라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sup>17)</sup>

## 2. 전자문서와 민사증거법상의 문서

전자어음이 전자문서라고 한다면 전자문서가 민사증거법에 있어서의 문서, 특히 서증조사의 증거방법인 문서에 해당될 수 있을지 문제된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함에 있어서 서증조사의 절차가 적용되느냐에 있다.

구민사소송법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고, 학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문서설과 비문서설로 나뉘어져 있었다. 신민사소송법 하에서도 전자문서를 문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신법은 전자문서를 서증조사의 대상인 문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본다.<sup>18)</sup> 왜냐 하면, 신법은 제2편 제3장에서 증거조사를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그 밖의 증거'로 분류한 다음, 「문서」는 서증조사의 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고(제343조 이하), 「그 밖의 증거」에 해당되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절 내지 제5절(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74조).

여기서 「그 밖의 증거」란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를 뜻한다. 신법 제374조는 그 예시로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

17) 한규현, 전계논문, p.149

18) 한규현, 전계논문, p.151

터용 자기디스크'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증거들은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에 해당된다. 그 밖의 증거에는 위에서 예시한 증거 이외에도 컴퓨터용 자기테이프, 광디스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신법에서 전자문서의 문서성과 관련되는 규정은 신법 제374조의 규정 중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신법 제374조에서 말하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이란 컴퓨터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를 뜻하고, 여기에는 문자정보, 도면정보, 사진정보, 음성·음향정보, 영상정보 등을 담고 있다. 신법 제374조가 전자문서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어, 전자문서가 위 조문에서 말하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자문서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정보를 담고 있는 유형물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전자문서가 위 조문에서 말하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 중에서 문자정보를 담고 있는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에 해당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sup>19)</sup> 신법을 이렇게 풀이한다면, 전자문서는 서증조사의 증거방법인 문서에 해당되지 않고, 신법 제374조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되는 「그 밖의 증거」에 해당된다.

그리고, 법령에 전자문서를 문서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전자문서에 대하여 문서에 관한 증거조사방법인 서증절차를 곧바로 적용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전자문서는 그 자체로는 가시성·가독성이 없고, 민사소송법에서의 서증조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가시성·가독성이 있는 문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문서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법령이든 그렇지 않는 법령이든 간에 전자문서에 기억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 인쇄한 문서(출력문서)를 항상 법원에 제출할 수밖에 없고, 전자문서와 출력문서와의 동일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검증이나 감정, 증인신문 등을 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sup>20)</sup>

19) 한규현, 전계논문, p.152

20) 한규현, 전계논문, p.152

신법의 규정은 일본 민사소송법 제231조(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sup>21)</sup>에 기초하고 있지만, 일본과는 달리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를 조문에 명문화시키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고, 아울러 일본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서증의 규정 안에 두면서 서증조사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나라의 신법은 서증의 규정과는 별도로 「그 밖의 증거」라는 표제로 새로운 절을 두면서 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규칙<sup>22)</sup>(이하 '신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20조(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이 모두를 '자기디스크 등'이라고 한다)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출력문서'라고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로 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한다.

③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가 도면·사진 등에 관한 것인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IV. 전자어음의 증거능력과 증거방법

### 1. 증거능력의 문제

전자어음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자어음이 전자문서로서 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문서가 되느냐의 여부이다. 전자문서가 증거로 채택

21) 일본 신민사소송법에는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조사' 항목이 빠져버린 대신, 제231조(문서에 준하는 물건에의 준용)는 「이 절의 규정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기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성된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 각 증거에 대하여는 서증절차를 준용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을 밝히고 있다.

22) 2002. 6. 28, 대법원규칙 제1761호

되기 위해서 당사자는 그 전자문서가 송신자에 의하여 생겨났고 전달 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적절한 보안조치는 그 기록의 신뢰성과 상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입증시킬 증거능력과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고, 이렇게 적절한 보안조치에 의하여 보관된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정책은 전자상거래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증거능력은 증거로서 채택할 대상에 제한이 있는 법제에서의 문제이다.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민사소송법 제187조)과는 달리, 미국법에서는 '最良증거법칙(best evidence rule)'<sup>23)</sup>에 의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경우 원본이 아니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Federal Rules of Evidence §1002). 만일 현행법 아래에서 메시지는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증거로서 허용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증거능력의 문제는 서면성·서명성과 아울러 장해제거를 위한 대응이다.

그런데, 컴퓨터 인쇄 출력물(computer printouts)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sup>24)</sup>는 컴퓨터자료가 계약의 존재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지지하였고, '최량증거법칙(best evidence rule)'을 이유로 신뢰할 만한 컴퓨터 증거를 배척한 예는 거의 없다.<sup>25)</sup>

미국 연방 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 1001(3)은 원본(original)이 만약 컴퓨터 또는 유사 장비에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프린트출력이나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출력은 원본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 규칙 803(6)은 원래의 컴퓨터 자료축적이 규칙적 사업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증거로서 제시된 'hard copy'가 소송에서의 사용을 위해 출력되었다는 사실은 증거능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기존의 문서와 같은 효력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전자서명에 대해서도 기명날인

23) John Kaplan & John R. Waltz & Roger C. Park, *Evidence*, Gilbert, 1992, p.215 에 따르면, 이 원칙은 서면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본(original writing)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common law상의 증거법 원칙으로 'original writing rule'로 불리기도 한다.

24) *Ibid.*

25) Deborah L. Wilkerson, "Electronic Commerce under the U.C.C. Section 2-201 of Statute of Frauds : Are Electronic Message Enforceable?", *Kan.L.Rev.* (winter, 1992), p.423

또는 서명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7조, 전자서명법 제3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는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문자나 부호 등에 의하여 사상을 표현하는 문서 이외에 전기·전자장치에 의하여 이를 축소 변형시켜 사상과 사건을 기록·전달·보존하는 새로운 정보매체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그 가운데 컴퓨터용 磁氣테이프(magnetic tape)는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보존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에 따라 이들 장치에 입력된 정보(컴퓨터 데이터)를 이용할 필요성이 매우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에서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종래 컴퓨터 데이터(computer data)의 증거방법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법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書證說, 檢證說, 신서증설이 대립하고 있다.

서증, 검증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이냐의 문제는 調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거방법 및 거기에서 얻어지는 증거자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 2. 증거조사절차

### 1) 증거조사방법

서증, 검증 중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이냐의 문제는 調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거방법 및 거기에서 얻어지는 증거자료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이들 정보매체의 기록내용을 증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보존하는 매체(컴퓨터용 磁氣테이프 등) 그 자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의 검증의 방법에 의한 증거조사가 행하여진다는 데 이론이 없다.<sup>26)</sup> 즉 전자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전자문서 자체의 「외관, 성상, 형상, 성질」에 대하여 법관이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검증의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면 된다.

26)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1994, pp.624-625

여기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들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이다. 왜냐 하면 이들 매체의 기록내용은 그 자체로서는 시각에 의하여 내용을 읽을 수가 없고, 이들을 조작해서 그 내용을 재현시킨 경우에 비로소 사람의 사상을 표현한 문서가 되기 때문에 이들 매체를 '문서'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다.<sup>27)</sup>

물론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그 출력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전자문서 그 자체를 증거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력문서를 하나의 독립한 증거방법으로 하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신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절 내지 제5절의 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는 신민사소송법 제374조에서 말하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 중에서 문자정보를 담고 있는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에 해당된다고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전자문서는 신민사소송법 제374조의 「그 밖의 증거」로서 위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실시하면 된다.

그리고, 신규칙 제120조 제1항은 신법 제374조의 위임에 따라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당사자는 출력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신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감정, 서증, 검증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규칙 제120조는 전자문서의 기재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증거조사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전자문서와 출력문서와의 관계 및 그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증거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이를 서증란에 기재할 것인지, 아

27) 대법원 1981. 4. 14. 80 다 2314 판결(『법원공보』 제657호 p.13898)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는 검증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면 증인 등 란에 기재할 것인지 문제될 수 있고,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판결문에 어떻게 인용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따라서 이들 규정만으로는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를 입법적으로 모두 해결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新民사소송법 아래서도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절차는 위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의 한정된 논의이기는 하지만 해석론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 2) 증거방법에 관한 해석론

### (1) 서증설

전자문서는 정보의 보존 전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그대로는 읽을 수 없지만, 보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예정하기 때문에 문서 또는 준문서로 보아 서증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본다.<sup>28)</sup>

서증설은 문서란 반드시 문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속기 기타 부호에 의하여 사상적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유형물을 말하므로 녹음테이프를 예로 들어 이는 언어를 서면으로 보존하는 근대적 형식이라고 본다.<sup>29)</sup> 이에 비추어 자기테이프가 문서에 갈음하여 작성된다는 점, 즉 그 기능을 중시하여, 이것을 전자적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을 표현하는 문서 또는 準文書로 보고, 그 증거조사는 서증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풀이한다. 그리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 종래에는 자기테이프(원본) 외에 '번역문의 첨부' 규정(민사소송법 제277조)을 유추하여 프린트 아웃된 서면(謄本)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sup>30)</sup>

서증설의 입장에서 신규칙 제120조를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에 관하여는 서증설의 견해를 충실히 따른다면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전자문

28) 이시윤,新民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p.434 : 竹下守夫, コンピュータ-の導入と民事訴訟法上の諸問題, JURIST 484號(1971. 7), p.31 이하 : 加藤新太郎, "新種證據の證據調べ", 講座新民事訴訟法Ⅱ[編輯代表竹下守夫](弘文堂, 1999), p.252 이하 참조

29) Kohlhaas, "Die Tonbandaufnahme als Beweismittel im Strafprozess", NJW, 1957, Heft 3, S.83 : Maurach, deutsche Strafrecht, BT. 2. Aufl., 1956, S.415

30) 이시윤,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0, pp.604~605 :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3, p.673 : 김홍규, 전계서, pp.624~625

서는 문서 또는 준문서로 보아 서증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되, 전자 문서 그 자체로는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를 증거자료로 함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제출한다. 이 출력문서는 전자문서에 같음하여 제출되는 것이고, 그 성격은 사본이라 할 것이다.<sup>31)</sup> 이 설은 전자문서를 문서 또는 준문서로 파악하여 서증조사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전자문서를 증거조사한 경우에는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서증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하고, 증거방법란에는 예컨대, '약속어음(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라고 기재하게 된다. 증거조사결과를 판결문에 기재할 때에는 '갑제1호증(약속어음(전자문서 또는 자기디스크))의 기재'라고 기재하게 된다.

## (2) 검증설

자기디스크 등은 문자 그 밖의 기호에 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서가 될 수 없으므로 증거조사절차는 녹음테이프에서와 같이 검증절차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다.<sup>32)</sup> 다만, 자기디스크 등에 기억된 정보 내용이 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를 원본으로 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sup>33)</sup>

검증설에 의하면, 녹음테이프의 경우를 예로 들어, 녹음테이프가 사상의 기록이지만 서증의 필연적 개념수단인 인간의 문자(menschliche Schrift)를 쓰지 아니 하였다는 데서 구하거나,<sup>34)</sup> 녹음테이프가 통신능력(Verkehrsfähigkeit)이 없다는 데서 구하고 있다.<sup>35)</sup> 이에 비추어 컴퓨터 磁氣디스크는 見讀가능성이 없으므로 문서로 볼 수 없고, 또 컴퓨터 데이터는 컴퓨터의 조작 또는 오조작에 의하여 改變되거나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추정규정(민사소송법 제356조, 제358조)을 적용하기 힘

31) 한규현, 전계논문, p.169

32) 대법원 1981. 4. 14. 80 다 2314 판결(『법원공보』 제657호 p.13898)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조사는 검증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3) 강현중, 민사소송법(제5판), 박영사, 2002, p.581 이하 : 本間義信, コンピューター用磁氣テープについての文書提出命令, 判例タイムズ 390號[臨時増刊](1979. 9), pp.264-265 : 加藤新太郎, 前掲論文, p.252 이하 참조

34) Fassang, *Kommentar zur ZPO* Bd.Ⅲ, Verlag C.H.Beck, 1961, vor §368, S.570

35) Blomeyer, *Zivilprozessrecht*, Verlag C.H.Beck, 1963, §71, S.570

들며, 법관이 형식적 증거력을 직접 판단할 수 없고 이에 관하여 직권에 의한 鑑定(동 법 제365조)을 명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검증에 의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sup>36)</sup> 이 견해에 따를 때에는 자기테이프의 증거조사절차는 법원이 검증의 신청을 받아 증거결정을 한 뒤에, 감정인이 데이터를 현출시키기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컴퓨터를 조작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데이터를 현출(프린트 아웃)시키고, 그 결과를 검증조서에 기재한다. 검증조서에 프린트 아웃된 서면을 인용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검증설의 입장에 따라 위 규칙을 풀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문서는 문서가 아니므로 서증이 아닌 검증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 그 자체를 법정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전자문서를 증거조사한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의 검증과 마찬가지로 서증목록이 아닌 증인 등 목록에 증거조사사실을 기재하게 된다. 증거방법란에는 검증(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라고 기재하고, 비고란에 '검감제1호증'의 부기를 하며,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판결문에는 '전자문서(또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검증결과'라고 기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견해에 따라 출력문서를 원본으로 하여 서증으로 제출하는 입장은 신서증설의 입장으로서, 검증설과 배치되기 때문에 이론구성에 무리가 있다. 즉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은 신규칙의 태도와 맞지 않게 된다. 다만, 이 설에 의하더라도 신규칙 제120조를, 전자문서 그 자체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출력문서를 제출, 증거조사함으로써 전자문서 그 자체에 대한 검증절차에 같음한다고 풀이할 수도 있겠지만, 법관이 자기의 오관(五官)의 작용에 의하여 검증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검증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해석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sup>37)</sup>

### (3) 신서증설

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경우에는 녹음테이프와 달리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법정 등에서 금방 출력·확인하기가 어렵고 그 출

36) 강현중,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2, p.598

37) 한규현, 전계논문, pp.169-170. 다만, 출력문서를 독립한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전자문서 그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다.

력문서는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그 자료를 서면화한 것이므로 여기에 기억된 사상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출력문서를 원본으로서 서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sup>38)</sup>

신서증설에 의하면, 자기디스크는 그대로는 見讀불가능하지만, 견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른바 '가능문서'라고 보고, 당사자는 자기 테이프로부터 데이터를 프린트 아웃시켜, 그 서면에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 문서의 체계를 갖추어(이를 '生成문서'라 한다), 생성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법원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법관의 면전에서 데이터를 프린트 아웃시키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 자기테이프 자체를 제출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주고 기밀을 침해할 수 있으며 비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당사자로서는 증거자료로 하고 싶은 부분만 문서의 형태로 하여 제출시키면 된다. 문제가 되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해서는 컴퓨터를 조작한 사람을 증인으로 訊問하거나 프린트 아웃의 재시행 또는 컴퓨터 자체의 검증·감정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의한다.<sup>39)</sup>

이 견해는 전자문서를 가능문서, 출력문서를 생성문서로 보고 출력문서를 원본으로 하여 서증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게 되면 출력문서는 원본의 성격을 갖고, 서증의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된다.<sup>40)</sup> 이 견해는 형식적 증거력에 관하여 컴퓨터를 조작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프린트 아웃의 재시행 또는 컴퓨터 자체의 검증, 감정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증인 등 목록이 아닌 서증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하고, 증거방법란에는 예컨대 '약속어음(전자문서의 출력문서 또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의 출력문서)'라고 기재하게 되고,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판결에 인용할 때에는 예컨대 '갑제1호증(약속어음(전자문서의 출력문서 또는 컴퓨터용 자기디스크의 출력문서))의 기재'라고 나타내

38) 송상현, 민사소송법(신정4판), 박영사, 2004, p.680 : 호문혁, 민사소송법(제2판), 법문사, 2002, p.269 : 加藤新太郎, 前掲論文, p.253 참조

39) 정동윤, 『민사소송법(제4개정판)』, 법문사, 2001, p.560

40) 정동윤, 전계서, p.559 이하 : 김상원 외 3인, 전계서, p.526 : 유병현, "민사소송상 전자문서와 증거", 민사소송(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2, p.305 이하

게 된다.

#### (4) 신검증설

신검증설은 전자문서 그 자체 및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의 증거조사는 검증에 의하여야 하고, 이것이 본래적이지만, 출력문서도 그 자체 독립한 원본으로서 서증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sup>41)</sup> 전술한 신서증설에서는 프린트아웃한 문서는 가능문서와 연속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 설에서는 연속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문서로 파악한다. 독립한 문서는 일종의 보고문서이고, 실질적 증거력은 낮게 된다.

신검증설의 입장에서 신규칙 제120조를 풀이한다면, 출력문서는 독립한 원본으로서 서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전자문서 그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설의 기본입장이라 하겠다. 따라서 위 검증설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설은 기본적으로 검증설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검증설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신검증설에 있어서는 직접 증거자료로 되는 것은 전자문서의 데이터로부터 일정한 출력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이고, 출력문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성은 사실상 추정되는데 지나지 않는다. 즉 신서증설과 마찬가지로 출력문서를 원본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 전자문서에 기록된 작성자의 사상 내용을 직접적 증거자료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흡사 문서의 사본을 원본으로 하여 제출한 경우의 증거력밖에 인정되지 않게 되어 실질적 증거력을 극히 한정하는 결과가 된다.<sup>42)</sup>

#### (5) 검토

법원행정처 실무편람에 의하면, 문자정보가 기억된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그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력문서 그 자체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과는 구별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기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검증의 방법이 아니라 출력문서의 제출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므로 증거방법은 '자기디스크 등' 임에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출력문서 자체가 증거방법이 되므로 서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

41) 加藤新太郎, 前掲論文, p.253 참조

42) 한규현, 전계논문, pp.164, 171

으로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서증목록이 아닌 증인 등 목록에 증거조사 사실을 기재한다. 구체적으로는 신청인이 제출한 출력문서 첫 장의 여백에 “자기디스크 출력문서조사” 등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다음 출력문서를 기록에 편철하고, 증인 등 목록의 ‘기일 및 장수’란에 증거신청을 한 기일과 출력문서의 페이지를 적고, ‘증거방법’란에는 “출력문서조사(자기디스크 등)”라고 적는다. 만일 출력문서가 여러 개일 때에는 그 목록도 함께 제출받아 조서에 첨부하고 그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결서 등에서 이러한 증거조사결과를 증거로 인용할 때에는 “출력문서조사결과”라고 기재하는 것이 상당하고, 출력문서가 여러 개이어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출력문서의 제목을 함께 적으면 된다.<sup>43)</sup>

이러한 입장은 위 학설의 어느 견해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다만 전자문서 그 자체를 검증하는 대신에 출력문서 제출이라는 간이한 검증을 실시하면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본다. 그러나, 전자문서와 달리 출력문서는 민사증거법상 문서로서 그 의미, 내용이 증거자료가 되는 서증조사의 증거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출력문서의 제출만으로 전자문서 그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 실무편람은 출력문서의 제출이라는 간이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풀이하지만, 제출된 출력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결국 출력문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는 서증조사의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사실상은 서증조사를 하면서도 판결문에는 “출력문서조사결과”라고 기재하는 것은 의문이다. 즉 위 실무편람의 설명은 출력문서를 서증조사의 형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고서도 “출력문서조사결과”라고 하여 마치 전자문서 그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므로, 위 실무편람의 견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위 실무편람의 입장은 전자문서 그 자체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으로서 출력문서를 제출하는 것은 출력문서 자체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것과 구별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논리를 적용해 나가면 전자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출력문서조사결과”라고 기재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갑제1호증(계약서(전자문서의 출력문서))의 기재”라고 표현하게

43) 법원행정처, 민사재판 운영실무-신모델 실무편람-, 2002, p.180

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이든 후자의 경우이든 모두 출력문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하여 서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그 증거조사를 서로 달리 기재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sup>44)</sup>

생각건대, 전자문서는 서증조사의 증거방법인 문서는 아니지만, 문서의 기능과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특히 서증의 절차를 준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 점은 서증설에 의하면 서증의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게 되지만, 신민사소송법 제374조는 이와 달리 서증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어 서증설과는 조금 다른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편, 신규칙 제120조 제1항은 '전자문서에 기억된 정보를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출력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sup>45)</sup>, 이러한 신규칙의 태도는 신서증설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오히려 서증설의 입장에 근접하고 있다고 본다.<sup>46)</sup> 따라서 이 규정은 전자문서에 기억된 정보를 증거자료로 함에 있어서는 전자문서 그 자체 대신에 이에 갈음하여 제출된 출력문서를 서증의 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이러한 입법태도는 전자문서가 문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을 중시하면서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증설을 취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난점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서증설에서는 출력문서를 사본으로 보고 있고, 신서증설에서는 출력문서를 원본으로 보고 있음에 반하여, 신규칙의 태도는 이러한 학설과는 달리 출력문서의 원본성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단지 출력문서를 전자문서의 내용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에 기억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 당사자는 전자문서에 갈음하여 출력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고, 법원은 전자문서에 갈음하여 제출된 출력문서를 서증의 절차를 준용하여 증거조사하면 된다고 본다.<sup>47)</sup>

44) 한규현, 전계논문, p.172

45) 종전의 법원행정처가 마련한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에서는 '출력한 문서를 원본으로 하여 서증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서증설을 따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6) 한규현, 전계논문, p.173

47) 한규현, 전계논문, pp.173-174

## V. 전자어음의 증거력과 공인전자서명

### 1. 전자어음의 증거력

전자어음에 관한 증거능력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원은 수신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인증이 확보되고 있는 경우, 법적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송신자에 대하여 메시지 내용에 따라 책임추궁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고 구술에 의하여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되면 가능한 우리나라 법 아래에서는 이 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민법 제531조 이하).

이 판단은 우리나라 법에서는 입증책임의 문제, 즉 객관적 입증책임과 주관적 입증책임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되고, 미국 법에서는 이 입증책임(the burden of proof)이 설득책임(the burden of persuasion)과 증거제출책임(the burden of going forward with evidence) 두 가지에 의해서 판단된다. 설득책임에 있어서는 소송상의 쟁점인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필요한 주요사실에서, 소송에 제출된 모든 증거를 동원해도 사실 인정권자인 배심원과 재판관이 그것의 존부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불이익되는 판단이 내려진다. 어느 쪽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은 경험상의 개연성, 권리의 성질, 공정성, 사회정책 등 견지에서 법률요건마다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진행에서 전환되는 일이 없다. 반증을 허용하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이 인정된 경우에 前提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은 추정된 사실의 부존재를 입증할 「설득책임」을 진다. 설득책임에 실패했을 때는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의 평결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루어진다. 단지 입증책임(the burden of proof)이라고만 할 때에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하여, 증거제출책임에 있어서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인간이 그 존재를 일단 추인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이른바 일응의 추정 증거(prima facie evidence)조차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배심원 評議로 권리가 회복되지 않고 지시평결(directed verdict)에 의해 패소할 위험성을 말한다. 이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설득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있지만, 어떻게 그의 증거제출로 지시평결을 모면하게 되고 또 상대방의 반대입

증이 없고, 게다가 상대방을 지시평결로 패소시킬 수 있을 정도의 증거(합리적인 인간이라면 사실의 존재를 추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 prima facie evidence)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제출책임은 상대방에게 전환된다(지시평결을 모면할 정도의 증거를 제출하면 이미 상대방에게 이 책임이 전환된다는 견해도 있다).<sup>48)</sup>

그리하여, 계약성립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법에 의하든지 계약성립을 주장하는 측에서 주장·입증책임을 진다. 예컨대, 메시지의 수신자인 가상점포 측에서 송신자는 명의인 본인이라는 점 등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서는 가상점포는 이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까. 이것이 증거법에 있어서의 다음 문제의 초점이다.

단지, 메시지만으로 계약성립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할 것이다. 메시지는 ① 송신자와 ② 송신의도 양쪽에 대하여 증명할 수단으로 미흡하기 때문이다. 즉 증거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미국 법에서도 또한 같다.<sup>49)</sup> 이에 따라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50)</sup>

새로 제정된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4항). 또한,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서 및 교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7조 제3항).

메시지 송신이라는 사실에 기하여 계약이 성립한다면, 데이터의 송수신자는 계약성립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계약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계약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미 발생한 모든 법적 효과가 상실된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증거자료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증거자료의 확보는 다음과 같이 증거법상의 문제로서 파악하여 바로잡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전자상거래가 係爭된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자료는 메시지뿐이다. 따라서 법원에 대하여 계약 성립을 인정받기

48) McCormick, *Evidence*, 2nd ed., 1972, §336 이하

49) T. J. Smedinghoff, *Analyzing State Digital Signature Legislation*, 1997, 9, p.4

50) 信森毅博, “米國における電子取引法の検討状況(2)”, 『NBL』 No.665 (1999.5), p.41

위해서는 메시지에 의한 계약성립의 증명이 가능해야 한다. 메시지에 의한 증명의 가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증거법상 새로운 입법의 검토가 이루어지는 배경에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 시키려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 단지 서면성·서명성이 있는 전자상거래의 장해제거를 목적으로 할 뿐이라면, 반드시 새로운 입법을 검토할 필요는 없다. 사기방지법은 폐지되더라도, 판례의 유연한 해석에 의해 현존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sup>51)</sup> 특히 서명성의 요건에 관한 한, 법원은 편지 지 윗부분에 인쇄된 발신인 또는 회사의 주소, 이름 등(letter head)에 있어서도 이를 인정하는 등 확장해석하고 있고,<sup>52)</sup> 메시지상의 명의인의 記述이 서명으로 판단되는 데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어음발행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다. 공인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2001. 12. 7.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을 일반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으로 이원화하고, 공인전자서명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 2. 전자어음의 위조·변조의 문제

### 1) 전자어음의 위조·변조의 특징

전자문서로서의 전자어음의 위조는 공인전자서명을 위조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서면 어음에 비해 용이하지 않으며, 전자어음의 변조 역시 비대칭 암호화 방법(PKI)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위조 및 변조가 기술적으로 검색되므로,<sup>53)</sup> 위조·변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비대칭 암호화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면 어음에 비해 위조·변조가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전자어음은 전자적 방식으로 양도하기 때문에 전자적 복제의 특성상

51) ABA Guide Line Comment 5.3.1 : Robert E. Scott & Douglas L. Leslie, *Contract Law and Theory*, 2nd ed., 1993, pp.343~366

52) Official Comment to U.C.C.§1-201(39)

53) 이에 관하여는 나승성, 전자상거래법(개정판), 청림출판사, pp.123-126 참조

배서인이 원본을 관리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서인은 관리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이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전자어음의 경우 단순한 배서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어음이 복제본과 구별되는 어음의 유일한 정본임을 증명하는 즉, 전자어음이 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자어음의 유통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배서인이 전자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이증으로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이 배서인의 배서를 위한 전자서명시 배서인의 전산장치에 남아 있는 전자적 정보(전자문서·전자서명)를 폐기시키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의 방법과 중앙관리기구에 등록되는 경우 전자어음에 배서가 이루어진 후 동일한 배서인이 재차 타인에게 배서하는 경우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이증으로 유통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중앙관리기구 설치문제

### (1) 필요성 검토

이에 따라, 전자어음법은 전자어음의 배서 등에 의한 양도보다는 어음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의 발행, 배서, 지급제시 등은 중앙관리기구를 경과하여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어음의 유통과 권리행사에 관한 모든 정보가 중앙관리기구에 집중되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sup>54)</sup>

이와는 달리, 중앙관리기구의 설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전자어음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므로 전자증권 자체도 유가증권처럼 독자적으로 발행되고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등록을 요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구하여서는 유가증권의 이전이 제한될 수 있어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자는 유가증권제도의 취지에 역행하게 된다.

둘째, 등록기구와 같은 별도의 기구가 없어도 공인전자서명 등을 이용함으로써 양도 당사자간의 전자어음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이증양도를 방지

54) 정완용, 전거서, pp.187-188 ; 이철송, 전자어음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2001, 7, p.42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전자어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배서 등의 경우에 원본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증으로 양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 방법이 고안된다면 중앙관리기구가 없어도 양도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중앙관리기구의 설치로 전자어음의 통일적 관리 및 어음행위 당사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은 있으나 중앙관리기구의 인증서 등의 관리는 공인인증기관이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증양도의 금지 또는 소멸어음의 사후 유통 등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폐기한다든가 하는 방법 등으로 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여 지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sup>55)</sup> 다만 전자수표는 원본과 사본의 개념이 없어서 어느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원본인지, 그리고 파일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몇 번이고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 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는 전자서명 기술에 의해 이전 사용자(배서인)의 전자서명을 무력화하는 기술에 의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자어음법은 중앙관리기구가 사업자의 거래내역 등의 고유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세원노출 등 거래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이용자의 이용기피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일한 정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의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굳이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의 등록기관을 경유하지 않아도 거래당사자간에 거래가 완결될 수 있어 보다 편리할 것이다.<sup>56)</sup> 따라서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중앙관리기구의 설치문제는 전자어음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선호 및 규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sup>57)</sup>

## 2)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지위

그런데, 공인전자서명 자체가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의

55) 중앙관리기구를 도입하는 목적이 거래의 신뢰성 확보인데 공인인증제도 역시 거래의 신뢰성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복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중앙관리기구를 도입하기보다는 공인인증제도를 이용하거나 혹은 전자어음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전자어음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한다. - 정경영, 전계논문, p.20

56) 정경영, 전계논문, p.20

57) 나승성, 전계논문, p.145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즉 피위조·피변조자의 물적 항변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위조·변조어음의 취득자는 공인인증기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전자서명법 제26조). 따라서 공인인증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진다면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sup>58)</sup>

그리하여,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집중되어 관리되는 결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거래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등 어음정보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19조에서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귀책 사유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 VI. 결 론

전자어음법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에 따른 전자결제수단 및 규범체계의 부재라는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측면에서 제정되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전자어음제도가 현대 정보화·전자화 사회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또한, 전자어음의 이중유통의 문제, 전자어음의 분할문제 등 제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적 문제가 앞으로 동법의 시행과 함께 제기될 것은 자명하다. 전자어음에 관한 예상치 못한 새로운 법적 논의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깊은 검토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어음법의 주요 특징은 전자어음을 관리할 중앙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어음행위 즉 발행, 지급제시, 지급거절, 소구를 위한 거절증서 작성 등의 경우에도 전자적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전자어음법은 어음의 양도의 경우 전자서명에 의한 배서를 인정하고, 어음의 분할양도가 인정되며, 전자어음이 이중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경우 그 규율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전자어음법에 따르면 어음발행인이 공인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이를 기명날인

58) 정경영, 전계논문, p.16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같음하고 있다. 공인전자서명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전자서명을 일반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으로 이원화하고, 공인 전자서명에는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다.

전자어음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전자어음이 전자문서로서 소송법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문서가 되느냐의 여부이다. 전자문서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 당사자는 그 전자문서가 송신자에 의하여 생겨났고 전달 후에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전자어음에 관한 증거능력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법원은 수신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른바 증거력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어음의 유통과정에서 어음행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증거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요컨대, 전자어음의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어음이용에 있어서 안정성 및 전자어음의 위조, 변조 및 어음의 이중유통 차단, 전자어음의 발행·유통과 관련한 거래정보 보호를 준수하도록 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